



한의학,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대한한의학협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수 신 각 시도지부장 (참조-사무국(처)장)
(경유)

제 목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신청) 관련 안내

1. 한의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각 시도지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 관련 안내'(보건의료정책과-6680, 24.11.4.)를 하였고, 이후 블로그 등의 경우 의료 관련 게시물과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이 혼재되어 있는 매체로서 의료광고 심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블로그 등 게재 의료광고심의 대상 매체의 종류와 판단기준 등을 정립하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지자체(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의 안내를 적용함에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블로그 등을 무리하게 의료광고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심의받지 않은 경우 '개별 게시글'이 아닌 '전체 블로그'를 비공개(또는 폐지) 처리 요청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블로그 등의 게시물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신청 및 민원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블로그 내 의료광고 게시 관련, '전체 블로그'를 1건의 의료광고로 간주해야하는지, 또는 '블로그 내 개별 게시글'을 각각의 의료광고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

○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등은 의료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매체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을 「의료법」 상 의료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개별 게시물이 의료광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출처 : 보건복지부 질의회신(보건의료정책과-424, 2025.1.16.)

Q6 의학정보 게시물도 의료광고로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학술활동이나 정보공유의 목적이라면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게시하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관한 정보로

91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임

◎ 다만, 의학정보 내용과 함께 제시된 의료행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사례

청구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분명하고, 의학적 지식이나 의료정보가 책이난 논문, 의학 관련 학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의료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그 의료기관이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방법에 관한 소개와 결부되어 제공되는 경우 이는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의 오프라인 광고는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광고에 불과하지만, 블로그는 이에 접속한 대중과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취득, 전달 등이 더욱 늘어나고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오프라인 광고보다 오히려 광고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의료광고로서 의료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마636 결정)

*출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제2판)(보건복지부, 2024.12.31.)

주의 개별 게시물로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 지자체(보건소)별 지침 및 기준이 상이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의료광고심의팀(02-2657-5030, 5037, 5039)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붙임 : 1.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 관련 안내' 공문(보건의료정책과-6680, 24.11.4.) 1부.
2.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의료광고 판단 기준 질의 회신 공문(보건의료정책과-424, 25.1.16.)1부.
3. 의료광고 사전심의 반려(미대상) 및 접수(대상) 사례<예시> 1부. 끝.

대한한의사협회



담당자 주임 조수원 대리 윤은라 대리 조보람 과장 서정민 국(실)장 노동현

협조자

대한의-2025-01-0150 (2025.1.22.)

우 07525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 www.akom.org

법무국 의료광고심의 전화 02-2657-5030,503 전송 02-6007-1122

팀

7,5039

/ ad@akom.org

/ 공개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네이버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 민원, 지자체 질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다수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의료법」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 없이 자율심의기구(의협·치협·한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전심의를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 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주무관	이재혁	서기관	박준형	보건의료정책 전결 2024. 11. 4.
협조자				과장 성창현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68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09	팩스번호	044-202-3933	/ abb8600@korea.kr / 비공개(4,5,6)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경유)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의료광고 판단 기준 질의 회신

1.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제2024-11(2024.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의료광고 판단 기준 질의에 대한 우리부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1) 블로그 내 의료광고 게시 관련, '전체 블로그'를 1건의 의료광고로 간주해야 하는지, 또는 '블로그 내 개별 게시글'을 각각의 의료광고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2) 블로그 게시물 등 SNS 및 인터넷 매체 내 "의료광고"와 의학정보 게시글 등 "의료광고 외 내용" 판단 기준.
 - ※ ①의학정보(통상적인 치료정보, 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로만 구성 혹은 의학정보와 함께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성명'이 기재 ②진료, 환자와 관련 없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예 : 내부교육·행사, 학회 활동, 의료기관(의료인) 동정, 인상, 소회 등), ③게시 형식상 편지, 일기 등

나. 답변 내용

○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등은 의료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매체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을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기존 승인된 의료광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이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로그별로 심의하더라도 게시물이 추가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 의료광고심의기준('19.11.19., 의협·치협·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p.30 : "기존 승인된 광고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발췌 등 임의 변경하여, 심의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하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심의필 광고를 불승인 처리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개별 게시물이 의료광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이재혁	서기관	박준형	보건의료정책과 전결 2025. 1. 16.
			장	성창현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09	팩스번호	044-202-3933	/ abb8600@korea.kr / 비공개(5)

붙임3. 의료광고 사전심의 반려(미대상) 및 접수(대상) 사례 <예시>

주의 개별 게시물로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 지자체(보건소)별 지침 및 기준이 상이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의 접수 반려(미대상)

의료법 제57조 제3항 및 동령 제24조에 따라 사전심의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 진료시간 변경 공지 ::

000한의원

000한의원 02.2657.5039

진료시간 변경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진료시간이 변경됩니다.
이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월 - 금	09:00 - 18:00
토	09:00 - 16:00
점심시간	13:00 - 14: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000한의원 02.2657.5039

진료과목 안내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사상체질과	한방재활의학과

000한의원 의료진 안내

침구과 전문의
○○○ 원장

한방내과 전문의
□□□ 원장



000한의원 02.2657.5039

2월 휴무 안내

2월 00한의원 휴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내원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휴무	정상진료				
16	17	18	19	20	21	
				휴무	정상진료	

000한의원 02.2657.5039

예약 문의

전화 가능 시간 : 오전 9시 ~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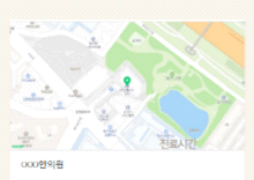
☎ 전화 문의
02.2657.5039



🌐 홈페이지
<https://ad.akom.org>

위치 안내

서울 강서구 하중로86



000한의원

☞ 사전심의 접수 반려(미대상)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



000한의원
우리 동네 건강 주치의



한의원



한의원

안녕하세요
000한의원
원장 000입니다.

연락처: 02-2657-5030

모로탈

+ 이웃추가

톡톡하기

우리 한의원 근처 맛집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한의원 근처에 위치한 맛집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치료 후에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회복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메뉴와 분위기를 갖춘 맛집을 함께 살펴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돼지고기 전문점입니다.



이곳은 신선한 고기 뿐 만 아니라 제철 재료로 만든 다양한 반찬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숙성된 목살이 인기 메뉴이며 냉면, 된장찌개 등 후식까지 완벽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파스타 맛집입니다.



한의원 근처에서 색다른 맛을 원하신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파스타와 스테이크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며, 신선한 샐러드와 함께 건강한 한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조명이 아늑하게 켜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데이트 장소로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위기 좋은 카페를 소개합니다.



치료 후에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와 커피를 제공하며,
분위기도 아늑해 공부나 독서를 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계절 한정 메뉴인 꽃김 디저트는 환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의원 근처에는 다양한 맛집이 있어 치료 후 기분 전환을 하기에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원에서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필요하겠죠? 다음에 한의원에 오실 때, 이 맛집들을 꼭 한 번 방문해보세요!

☞ 사전심의 접수 반려(미대상)

의학정보(통상적인 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 등)로만 구성된 게시물



OOO한방병원

안녕하세요
OOO한방병원입니다

비만이란 무엇일까요? 비만에 대해 알아보시다

OOO한방병원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만은 지방이 정상보다 더 많이 축적된 상태로 체내 지방량을 측정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체내 지방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은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대개 간접적으로 평가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이용하는 것과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키의 제곱(m²)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성인 비만의 기준은 체질량지수 25 kg/m² 이상입니다. 체질량지수 25.0~29.9 kg/m²를 1단계 비만, 30.0~34.9 kg/m²를 2단계 비만, 35.0 kg/m² 이상을 3단계 비만(고도 비만)으로 구분합니다.

국내에선 허리둘레를 측정해 복부비만을 진단합니다. 허리둘레가 남성은 90 cm, 여성은 85 cm 이상일 때 복부비만으로 정의합니다. 허리둘레는 양발을 25~30 cm 정도 벌리고 서서 숨을 편안히 내신 상태에서 줄자로 측정합니다. 측정 위치는 옆구리에서 갈비뼈 가장 아랫부분과 골반 가장 윗부분의 중간 지점입니다.

비만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1) 제2형 당뇨병
- 2) 이상지질혈증
- 3) 고혈압
- 4) 심뇌혈관 질환
- 5) 암
- 6) 전식
- 7) 근골격계 질환
- 8) 소화기계 질환

비만을 치료하려면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체중을 조절하려면 음식 섭취 감소, 활동량 증가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체중을 감량할 때는 행동치료를 6개월 이상 지속할 것을 권하며,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1년 이상의 행동치료를 권합니다. 개인의 생활패턴, 체중 감량 목표에 따라 치료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식이요법, 운동치료 및 행동치료를 적절히 병행해야 안전한 체중감소 및 체중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식사조절을 통한 식이요법, 운동치료, 약물치료, 수술치료 등을 통해 비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사업자정보

-상호: OOO한방병원
-대표: @@@@
-주소: ##시 @@구
-전화: 02-2657-5030, 5037
-메일: ad@ekom.org
-사업자번호: 000-00-00000

☞ 사전심의 접수(대상)

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



한의원

지난 10여년간 한의사로
서 많은 환자의 다양한 증
상을 치료하며 안타까웠
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
으로 정밀하고 세밀하게
진료를 위하여 진료 하겠
습니다.

연락처: 02-2657-5030
프로필

+ 이웃추가

특목하기

수원 소재 교통사고후유증 치료하는 한의원

안녕하세요 ^^
한의원 원장 입니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교통량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초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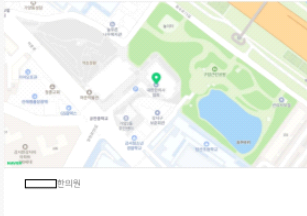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고는 대부분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고의 처리를 하느라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검진이나 치료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난 뒤 후유증에 시달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발생 초기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 후유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만성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찾아올 수 있는 후유증 증상과 한의원에서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
 - 목과 허리가 뻣근하다
 - 등이 결리고 아프다
 -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린다
 -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 팔, 다리가 붓고 저리다
 -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약 치료
 - 침 / 약침
 - 추나
 - 진맥
 - 한약 처방
 - 물리치료
 - 부항

빠른 일상 회복!!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받으러
우리 한의원으로 오세요



한의원

한 의 원

야간 진료실 운영안내

평일 화,목 저녁 9시까지

평일 낮 내원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매주 화, 목요일 야간 진료를 운영합니다.

예약 문의 02.2657 5030

OOO한의원

#교통사고 #교통사고치료 #한의원